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152
----------	-------

발의연월일 : 2026. 2. 27.

발 의 자 : 박지혜·안도걸·김병주  
이용우·이상식·민형배  
김원이·조인철·채현일  
이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로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16.1.6.) 개정으로 그동안 징역, 금고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집행유예 선고가 벌금형에 대해서도 가능해져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 관련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업 허가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신고의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의 범위에 대해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로 명확하게 하고,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의 의미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및 제5호).

## 법률 제 호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형을”을 “실형을”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를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형의”를 “ 금고 이상의 형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 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u>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p> <p>5.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u>형의 집행유예</u>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p> <p>6. (생략)</p>	<p>제6조(결격사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실</u> <u>형을</u> ----- -- <u>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u> <u>터</u> ----- -----</p> <p>5. ----- ----- <u>금고 이상의 형의</u> ---- ----- -----</p> <p>6. (현행과 같음)</p>